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주호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회현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음.

특히,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현장성 높은 사회정책 심의·조정을 위해서는 더욱 긴밀하고 체계적인 정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바,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역할 및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회의 구성원 확대(안 제4조제1항)

복잡다기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통계청장을 회의 구성원으로 추가함

나. 회의 개최시기 변경(안 제6조제1항)

회의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정상 개최시기를 현행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서 '수요일'로 조정함

다.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 근거 신설(안 제6조제2항)

현장성 높은 사회정책 심의를 위해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근거를 신설함

라. 정족수의 탄력적 조정(안 제6조제3항 단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구성원의 출석범위 조정 시, 의사 및 의결 정족수 규정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마. 안전 발굴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제3호)

신규 안전 발굴 등을 위해 관계 부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지원기구 지정·운영 관련(안 제10조)

체계적인 사회정책 안전 관리와 국민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성과 분석 등을 수행할 지원기구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진행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10조의2를 제9조의2로 한다.

제10조의3을 제9조의3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지원기구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사회현안 분석 및 정책의제 발굴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중전의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및”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통계청장 및”으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7조)의 제목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회의는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정 안건과 관련되는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중전의 제7조) 제3항(중전의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원의 출석범위를 조정하는 경우,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조정된 출석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의2(중전의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3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안건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회의의 개최시기 등) 회의는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 및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 (생략)	제3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구성원 등) ①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원 등) ① -----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통계청장 및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 (생략)	제5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신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7267